# 생명안전기본법안 (박주민의원·용혜인의원·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7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 박주민 · 용혜인 · 한창민

권향엽・박희승・김 윤

차지호 • 박지원 • 박정현

박해철 · 김우영 · 윤준병

이용선 · 임미애 · 장철민

이재정 • 민병덕 • 김문수

김남희 · 황명선 · 허성무

이용우 • 추미애 • 박홍근

김종민 · 서미화 · 전종덕

남인순 • 박은정 • 정동영

채현일 · 정춘생 · 박지혜

김정호 • 이정문 • 김 현

이수진 · 장종태 · 김선민

송옥주 · 신장식 · 이해민

이연희 · 강준현 · 백선희

김재원 · 김준혁 · 이광희

손명수 · 김준형 · 김예지

김영환 · 소병훈 · 김영배

윤종오 • 위성곤 • 김남근

강경숙 · 황운하 · 송재봉

전진숙 • 이학영 • 고민정

장경태 • 윤종군 • 진성준

이재강·정준호·김한규 김영호·한정애·김기표 박홍배·임호선·서왕진 김동아·강득구 의원 (77인)

## 제안이유
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·물적 피해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·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,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가.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,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 호,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 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

- 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,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·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함(안 제1조).
- 나. "안전사고"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 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(안 제3조).
- 다. 모든 사람은 성별·종교·국적·인종·세대·지역·사회적 신분·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(안 제4조).
- 라.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,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마.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안 제10조).
- 바.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,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(안제13조).
- 사.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 여 전문적·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를 수행하는 별도

- 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(안 제18조).
- 아.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 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20조).

# 생명안전기본법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,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,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, 안전영향평가제도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・신체・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・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이념) ①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 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안전 관련 법령, 조례, 규칙을 제정·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 모든 사람 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보 장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등은 안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 - 1. "안전"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.
  - 2. "안전사고"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.
  - 3. "피해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 - 가.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및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
    - 나.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· 정신적 ·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
    - 다.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 자매 및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
    - 라. 안전사고의 구조·수습·지원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· 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
    - 마. 안전사고의 목격자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
    - 바. 그 밖에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

- 4. "안전약자"란 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안 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장애인
  - 나. 노인
  - 다. 아동
  - 라. 임산부
  - 마. 확자
  - 바. 노숙인 등
  - 사. 저소득층
  - 아. 다문화가족
  - 자. 이주민
  - 차. 한국어 사용이 원활치 아니한 사람
  - 카.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
  - 타.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
- 5. "안전관련기준"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.
- 제4조(안전권) 모든 사람은 성별·종교·국적·인종·세대·지역·사회적 신분·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

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(이하 "안전권"이라 한다)를 가진다.

- 제5조(피해자의 권리) ① 피해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 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- ② 피해자는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- ③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과정에서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- 1.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
  - 2.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
  - 3.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  - 4.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
  - 5.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
  - 6. 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
  - 7.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
  - 8. 생활지원·의료지원·심리치료지원·치유휴직 및 재취업지원·고용유지지원·이동지원·주거지원·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
  - 9.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수습을 요구할 권리
  - 10. 사고원인과 국가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

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

- 11. 안전사고 및 그 대응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있는 주체에 대하여 처벌 등 적절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12. 배상 및 보상 등 피해자 구제를 받을 권리
- 13. 기억, 추모,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
- 14. 추모사업·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
- 15.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
- 16. 그 밖에 「대한민국헌법」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
- 제6조(국가등의 책무) ①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,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안전 관련 법령이나 조례, 규칙을 제정·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정보에의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,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하여

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- ⑤ 국가등은 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등은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 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소통·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안전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, 피해자에 대한 상담·의료 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, 관련 수사 및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7조(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) ①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국가등의 안전 관련 정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.
  - ②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를 예방 ·대비·대응·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 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.
  - ③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 발생 및 수습현장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다.

제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안전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

- 제9조(생명안전정책위원회) ①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(이하 "생명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생명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  - 1. 제10조에 따른 생명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  - 2. 주요 안전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
  - 3. 안전권 증진, 피해자 권리의 보장, 안전약자의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- 4. 안전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- 5. 안전예산의 배분·조정 내역에 관한 사항
  - 6.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  - 7. 그 밖에 안전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  - ③ 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.
- ⑤ 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・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생명안전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, 생명안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확정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③ 생명안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안전권 보장 목표와 방향
  - 2.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정책의 기본 방향
  - 3.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령·제도의 마련, 정비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 - 4.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 및 교육, 훈련에 관한 사항
  - 5.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
  - 6. 안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 - 7.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
- 8.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
- 9. 안전권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
- 10.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조사,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 생명안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안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.
- 제12조(안전 재정 및 인력 확보 의무) ① 국가등은 안전 관련 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력 및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력 및 재원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한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# 제3장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등

제13조(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) ①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생명ㆍ

-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등은 안전관련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, 안전관련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③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련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) ① 국가등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반적인 안전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, 안전 관리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시·도별 및 시·군·구별로 안전수준 진단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·분석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의 실시 시기, 내용 및 사후과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안전영향 분석·평가) ① 국가등은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법 령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조례·규칙을 말한다)과 안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여야 한다.
  - ② 안전영향분석평가의 대상·방법·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.

제4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등

- 제16조(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)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 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각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차별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의 기간과 범위·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.
  - ③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배·보상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, 구제절차와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·공개)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·단체 등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 청에 따라야 한다.
  - 1. 안전사고와 관련된 감사원·조사기구 등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서
  - 2. 안전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명칭·소재지·안전사고원인·재발방지대책·피해지원과 회복에 관한 사항

- 3. 유해·위험 물질 취급 및 노출에 관한 정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항
- 제18조(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)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인 조사(이하 "사고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,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(이하 "독립조사기구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③ 독립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사 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.
  - ④ 국가등은 독립조사기구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 를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⑤ 독립조사기구의 조직, 구성, 조사의 대상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- 제19조(기억과 추모)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추모공원·추모기념관·조형물·상징물·봉안시설 등을 포함한 추모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조성

- 2. 관련 자료의 수집·보존·활용을 통한 전시·출판·연구·학술 및 문화사업 및 국제협력사업
- 3. 현장의 보존·관리·조사·홍보 및 연구사업
- 4. 교육ㆍ체험관의 설립
- 5. 기념일의 지정
- 6. 그 밖에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억과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등은 제3항의 재단 등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공동체 회복)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· 공동체의 심리적 안정·동질성 유지·공동체 정신 및 신뢰의 회복 ·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

-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재단 등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) 국가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피계 획과 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지원체계의 확립 등) ① 국가등은 안전약자와 피해자에게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약자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  - 1.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것
- 2.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 제23조(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대한 지원,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업무에 수행하거나

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자
- 2.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